

정 관

2015

제 정 2004. 03. 31

개 정 2011. 02. 21

개 정 2014. 02. 18

개 정 2015. 04. 21

제 1 장 총 칙

제 1조(명칭) 본 포럼의 명칭은 “건설산업비전포럼”으로 하고 약칭으로 「건설포럼」으로 하며, 영문표기는 “Construction Vision Forum”으로 한다. (이하는 “본 회”라 칭함.)

제 2조(목적) 한국 건설산업의 당면과제와 미래에 예견되는 문제점의 개선이 국가와 국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토론과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산업 및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시켜 국가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발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소재지)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 4조(사업) 본 회의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건설산업의 주요 현안 및 ISSUE에 대한 토론회 개최
- ② 건설산업의 발전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 개최
- ③ 건설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주제 및 연구 수행 결과의 발표를 위한 세미나 개최
- ④ 건설산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Work Shop 개최
- ⑤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및 연구서 출간
- ⑥ 외국의 건설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
- ⑦ 기타 본 회의의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원

제 5조(종류 및 자격) 본 회에는 아래의 회원을 둔다.

- ① 일반회원: 건설산업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
- ② 단체회원 : 건설산업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
- ③ 사이버회원 : 본 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개인
- ④ 참여회원 : 회비를 납부한 단체회원이 추천하는 해당 단체의 임직원

제 6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

- ① 일반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, 발의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
- ② 단체회원은 그 대표자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, 납부 회비금액에 따라 일정 인원의 참여회원을 가입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, 그 권한과 인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.
- ③ 사이버회원은 본 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취득, 의견 개진 등의 권한을 갖는다.
- ④ 참여회원은 포럼에서 주관하는 토론회, 세미나, 워크샵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.

제 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,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8조(제명) 포럼은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제 9조(자격정지, 복권 및 상실)

- ① 본 회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된다.
- ②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만 2년 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복귀된다.

제 10조(탈퇴)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사퇴서를 본 회의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 또한 회원의 사망은 탈퇴로 간주한다.

제 3 장 임원 및 직원

제 11조(임원의 구성)

- ① 본 회의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1. 대표 5명 이내
 2. 부대표 2명 이내
 3. 이사 30명 이내(대표, 부대표 포함)
 4. 감사 2명 이내
- ②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하되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2조(임원의 선임) 대표와 부대표, 이사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 13조(임원의 직무)

- ① 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며, 본 회의 운영을 총괄한다.

- ② 부대표는 위원회 및 사무국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④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,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⑤ 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잠정적으로 대행하고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4조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관련단체의 장으로서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임기는 당해 단체의 장의 임기와 같다.
- ② 임원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③ 대표와 감사는 중임할 수 없다.

제 15조(임원의 보수)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, 거마비 및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16조(임원의 해임)

- ①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,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.
- ② 임원의 해임 결의는 총회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.

제 4 장 총 회

제 17조(총회의 종류와 소집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.
 1.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 2.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
 3. 회원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
 4.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
- ③ 대표는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④ 대표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 5일 전에 일시, 장소, 의안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8조(의결사항)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② 예산 및 결산의 의결
- ③ 사업계획의 승인
- ④ 대표, 부대표,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⑤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
- ⑥ 기타 이사회 의결로 제안되는 사항

제 19조(성원과 의결)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0조(회의록) 의장은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회원 2인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21조(의결권의 제한) 총회 의결사항이 회원자신의 책임에 관한 의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해 회원은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.

제 5 장 이사회

제 22조(구성)

- ① 이사회는 대표와 부대표,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 23조(소집)

-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.
 1.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 2. 이사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
- ②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전일까지 의안을 이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
제 24조(의결사항) 이사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예산안 및 결산안
- ② 사업계획안 및 사업계획 변경안
- ③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- ④ 회원의 제명
- ⑤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⑥ 일시 차입 및 기채
- ⑦ 회비의 결정 및 변경
- ⑧ 대표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

제 25조(성원과 의결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6조(이사회 의결의 서면결의)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 27조(회의록) 의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6 장 위원회

제 28조(구성) 본 회에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며, 필요 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추가할 수 있다.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며,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위원장과 총무를 둔다. 위원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출한다.

- ① 기획위원회
- ② 법제위원회

제 2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심의 및 활동을 한다.

- ① 기획위원회: 이사회를 보좌하여 포럼의 정기토론회 및 국내외 세미나 등 제반 행사 기획과 운영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, 포럼의 발전을 위한 신규 회원 영입 및 확보 등에 관한 업무
- ② 법제위원회: 국민과 건설업계에 불편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건설 법체계를 바로잡으며, 건설산업 통합법을 제정함으로써 건설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

제 7 장 사무국

제 30조(사무국)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내에 유급직원 약간 명을 둔다. 단, 직원은 대표가 임명한다.

제 8 장 자산 및 회계

제 31조(자산) 본 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- ① 회원의 회비
- ② 출연금
- ③ 찬조금(개인/단체)
- ④ 회의 수익사업(연구용역의 수주 및 수행에 대한 수익)
- ⑤ 기타수입

제 32조(경비의 충당) 본회의 운영, 재산의 취득, 각종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제31조의 자산으로 충당한다.

제 33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34조(예산 및 결산)

- ①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말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을 수립, 편성하여 이사회와 정기총회의 의결을 받는다.
- ②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,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34조의 2(기부금 결산내용의 공개) 제34조 제2호의 결산중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 한다.

제 35조(결산잉여금)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9 장 보 칙

제 36조(정관 개정) 본회의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한다.

제 37조(해산)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.

제 38조(해산에 따른 청산인) 본 회가 해산하였을 경우 제 11 조의 임원이 청산인이 되고 감사가 청산감사인이 된다.

제 39조(잔여 재산의 처분) 본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

제 40조(규정 및 내규)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며, 대표는 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41조(민법준용)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할 법인의 등기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(2010. 3. 15 승인)

이 정관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(2011. 2. 21 승인)

이 정관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2. 18 승인)

이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4. 21 승인)

이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